

[별표 4]<개정 2000.7.29>

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·절차 등(제22조제2항관련)

1. 검사시기

가.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

- (1)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석유제품(윤활유 및 그리스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, 공장밖의 저장시설(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·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(2)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윤활유 및 그리스에 대하여는 당해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(3)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나.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

- (1)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(윤활유 및 그리스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장밖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자체검사의 승인을 얻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 및 그리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다.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

산업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영 제34조제1항·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 의뢰 또는 위탁받은 검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.

2.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

가.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(KS)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.

나. 시험방법

- (1)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(KS)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규격(KS)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.
- (2) 한국산업규격(KS)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.

3. 검사결과 처리

가.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검사결과처리

- (1)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,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2)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,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3) 합격판정된 윤활유 및 그리스에 대하여는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에 검사필증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사필증을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나. 제1호 다목에 의한 검사결과처리

- (1)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,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,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한다.
- (2) 검사소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. 기타

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